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99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김재원 · 신장식 · 김성원
강경숙 · 강준현 · 김한규
이정문 · 임오경 · 차규근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재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

도 존재하므로 상업적 이용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제11호, 제14조의2 및 제41조제1항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하여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성명, 말투, 동작 또는 그 밖에 일반인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재현·합성 또는 생성한 전자적 표현물을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디지털 모사물의 상업적 이용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협찬 또는 상품·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은 사망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권리승계인이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표현물이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삭제, 정정표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용
2. 비평, 논평, 풍자 또는 패러디
3. 예술적 표현 또는 창작활동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1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하여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성명, 말투, 동작 또는 그 밖에 일반인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재현·합성 또는 생성한 전자적 표현물을 말한다.
<u><신 설></u>	제14조의2(디지털 모사물의 상업적 이용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협찬 또는 상품·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사망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권리승계인

제41조(과태료) <신 설>

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하는 자
는 해당 표현물이 디지털 모사
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삭제, 정정표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용
2. 비평, 논평, 풍자 또는 패러
디
3. 예술적 표현 또는 창작활동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4
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에 따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르지 아닌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u>제4항</u>----- ----- ----- -----.
---	---